9월 학교급식 학생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학생 안전사고 사 례	관련 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 조리장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함 • 학교급식법 제 8조 2항, 3항 2. 위생안전 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 사고발생시 급식실 조치사항 – 교내 '학교안전공제회' 관련업무 부서 인계**
	주요 내용	• 학생안전사고 발생 현황 - 급식시간에 화상, 골절, 자상, 타박상, 음식물 목에 걸림 등 학생안전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 - 화상의 경우 초등학교(55.7%) > 고등학교(30.4%) > 중학교(11.4%) > 특수(2.5%)순으로 발생 ☞ 학생수가 많은 초등학교 및 급식 빈도수가 많은 고등학교의 발생비율이 높음 - 발생시간 및 장소 : 급식시간 식당, 교실, 복도 등 - 사고발생에 따른 조치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 지급
	주요 실제 사례	사례1. **배식차**를 끌고 가다가 바퀴가 잠겨있거나 굴러가지 않아 무리하게 밀다가 배식차가 쓰러져 음식물과 식판 등이 쏟아져 타박상 및 골절 사례2. 국통을 들다가 **뜨거운 국물**이 쏟아짐 혹은 국을 배식하다가 쏟아짐 화상

주요 실제 사례	사례3. 배식하기 위해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는 학생이 **젓가락(수저)**으로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실명 	사례4. **미끄러짐 넘어짐** - 식당이나 교실에서 뛰다가 물기나 혹은 미끄러운 실내화 등에 의해 넘어져 골절과 타박상
	사례5. **방울토마토, 꿀떡**, 푸딩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고 	사례6.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갑자기 구토를 하는 사고 발생, 입을 벌려 목구멍 확장시 생선가시 보임
	사례7. 식사후 식판에 남긴 음식을 잔반통에 버리고 나가던 중 조리원이 끌고 가던 트레이와 충돌하여 무릎에 충격 	사례8. 식판을 잡고 장난으로 휘두르다가 뒤에 있는 학생 이마에 부딪혀 피부가 찢어진 사고

기타 사례	① 뜨거운 밥판 오븐팬 등을 손으로 잡다가 화상사고 발생 ② 식사후 일어나 급식실 식탁 사이를 지나가다 앞으로 넘어져 입을 바닥에 부딪힘 ③ 수업 후 급식을 빨리 먹기 위해 급히 뛰어가던 중 친구와 부딪혀 넘어짐 ④ 식당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부딪힘으로 인해 치아 골절사고 발생 ⑤ 겨울철 추운날씨로 얼어붙은 현관앞 빙판에서 미끄러져 팔에 골절상 ⑥ 점심 메뉴로 나온 낙지를 섭취하다 기도에 걸려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사고 발생 ⑦ 평소 잘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있는 학생이 순대를 먹다가 목에 걸려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임 ⑧ 점식 식사중 의자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임. 자리이동시 다시 앉는 과정에서 의자가 움직여 사고발생

	⑨ 음식속에 단단한 이물질(조개껍질, 돌, 단단한 뼈 등)을 씹어 어금니2개 파절 ⑩ 급식실 문이 외부와 직결되어 바람이 심하게 불던 중 앞서가던 학생이 급하게 문을 닫아 지나가던 학생의 발 뒤꿈치 부상 ⑪ 딱딱한 빵이 제공되었을 때 앞니로 물어 뜯다가 이빨이 부러진 사고 발생 ⑫ 식당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 급식실 문쪽으로 머리를 부딪힘 ⑬ 급식을 받기 위해 한줄로 서서 기다리다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교사의 주의에도 멈추지 않고 장난치다 옆사람과 부딪혀 창문에 이마가 찢어짐

안전관리 주의사항	주요 내용	① 담임교사의 입장 지도아래 급식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배식차를 밀고 당길 때는 바퀴가 열렸는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잠겼는지 확인하며 배식차를 올라타거나 장난하지 않고 2인 1조가 되어 사용하도록 한다. ③ 뜨거운 음식은 가급적 보호 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이 지나치게 뜨겁지 않도록 제공한다. ④ 수저와 식판을 들고서 장난하지 않도록 하며 식기류가 위험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⑤ 급식실에서 뛰지 않도록 하며 질서를 지키며 식사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⑥ 한 번에 삼켜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사전에 안내 하도록 한다.
학생안전수칙	주요 내용	< 배식차 운반 시> • 배식차를 운반할 때는 놀이기구처럼 다루지 않는다. • 배식차를 난폭하게 밀지 않으며, 앞의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반한다. • 배식차를 열 때 손가락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배식시> • 차례로 줄을 서서 서두르지 않고 배식을 받는다. • 배식할 때는 장난을 치지 말고 차례를 기다린다. • 식판을 옮길 때는 주변에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흐르게 되면 미끄러워져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며, 만약 음식물을 바닥에 흘렸을 경우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바로 휴지로 닦도록 한다. •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에는 흘리거나 튀지 않도록 조심한다. • 음식은 먹을 만큼만 알맞게 담도록 한다. • 식판을 옮길 때에는 두 손으로 옮기도록 한다. • 급식도구(수저 등)는 자리로 배식 마지막으로 배열하거나 식판 밑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급식도구 사용 시> • 급식도구의 사용법대로 바르게 사용한다. • 젓가락으로 친구를 찌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부리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 • 음식물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킨다. • 입에 음식물을 넣고 말하지 않는다.

음식물 기도 폐쇄시 응급처치 요령	주요 내용	■ 음식을 삼킬 때 식도로 들어가야 할 음식물이 더러 기도로 들어가 기도폐쇄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거나 흥분하거나 크게 웃을 때 발생 할 수 있다. ■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혔을 때의 이상 행동 - 두 손을 목을 감싸 쥐면서 기침을 하려고 한다. -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청색증) -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흰자위를 굴리면서 숨쉬기 곤란한 모습을 보인다. -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거나 쉰 목소리, 천명음(쌕쌕하는) 소리를 낸다. ■ 부드러운 것이 걸린 경우 떡 같이 부드러운 것인 경우는 환자를 옆으로 누이고 집게손가락과 중지를 볼의 안쪽을 따라 목구멍 속 까지 넣어 이물질을 밖으로 빼낸다. ■ 고형물이 가득 찬 경우 사탕, 동전, 방울토마토 등이 막힌 경우는 거꾸로 하여 등을 때리거나 집게손가락을 목구멍 속으로 비집어 넣어서 토해내게 한다. 또한 가슴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죄어주는 '하임리히법'을 사용하거나 등을 세게 두들겨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

식품 알레르기	관련 근거	학교급식법 제3장 제16조 품질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③,④항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7조 품질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2항
	주요 내용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알레르기 유병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및 사전 정보제공(의무) **※식약청고시 알레르기 유발식품(20종) :**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 홍합, 바지락** • 식품알레르기에 의해 '두드러기','가려움증','발열','아나필락시스','호흡곤란','쇼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 표시방법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

■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대책 마련

- 식품 알레르기 유병학생의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진료여부 및 가정에서 관리상태 등을 파악 보호자의 요구사항, 학교에서의 관리방안 등을 협의 기록유지

참고사항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

1.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목적 및 설립

-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 업무
- 학교폭력 치료비 등 지급 및 구상권 행사 업무 등
- 경기도교육감이 설립(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제15조)

2. 학교안전사고 범위(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의 질병
①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② 일사병
③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④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보상개요

4. 보상내용

상 해	치료실비(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 ※ 치아보철 2회 확대, 임플란트 인정 ※ 비급여(상급병실료 등) 일부제외
사망 · 장해	「국가배상법」수준 ※ 원인불명 사망 시 위로금 4천만원 지급
비용 보전	교직원이 지출한 손해방지, 경감비용, 긴급조치, 소송 및 공탁 등의 비용

5.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 절차도

가.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서 학교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나. 사고통지 : 사고통지 클릭 → 사고 내용 입력 → 사고통지서 내부결재 → 통보버튼 클릭

※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공제가입자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통보
→ 안전사고 미통지 및 거짓 통지 시 : 50만원 이하 과태료